

특별교육 제도 관련 QnA

Q. 특별교육이란 무엇인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그 업무와 관계된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특별교육 의무 대상 사업주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교육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는자도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Q. 어떤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교육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A.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특별교육 해당작업(39개)의 종류와 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료가 필요하다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마당에서 대상 작업 별 교안을 다운받아 사업장에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언제 어떻게 제공해야 하나요?

A.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직접 교육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역 안전보건교육기관>

기관명	주소	연락처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063-212-3214
주식회사 에스넷	전북 군산시 해망로 246	070-5014-2173

Q. 교육 제공을 못 했을 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A. 안전보건교육 의무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교육대상 1명 당: 50만원(1차), 100만원(2차) 150만원(3차)

Q. 특수형태근로자 종사자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A.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예방을 위하여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육 대상 사업장 체크리스트

- ◆ 사업장 내 작업 중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작업이 있다면, 사업주는 작업자를 **작업에 투입하기 전에** 해당 작업자에게 **특별교육**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육 교육시간>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수: 8시간 이상)
상용근로자	▲ 16시간 이상 (작업 시작 전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 단기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오	비고
<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오	비고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 기계[등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 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오	비고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 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등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6. 로봇작업			
37. 석면해체·제거작업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